

부산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2나5782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망 A의 소송수계인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앤케이, 담당변호사 이상훈

피고, 항소인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혜리

변 론 종 결 2023. 7. 6.

판 결 선 고 2023. 7. 20.

제1 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 7. 8. 선고 2021가단322797 판결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21. 2. 2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는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등기국 2021.

2. 25. 접수 제1109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다. 피고 B은 원고에게 31,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A의 피고 B에 대한 2020. 12. 25.자 현금 대여금 300만 원 청구 부분은 이를 기각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A가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기초사실

가. A와 D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자녀 J, K를 두었고, 피고들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들은 2013. 1. 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A는 피고 B 명의 계좌로, 2020. 12. 25. 500만 원, 2021. 1. 22. 1,850만 원, 2021. 1. 26. 480만 원 등 합계 2,830만 원(이하 ‘이 사건 송금액’이라고 한다)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 B은 2021. 2. 24.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증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그에 따라 피고 C는 부산지방법원 등기국 2021. 2. 25. 접수 제11092호로 위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A는 이 사건 항소심 계속 중인 2023. 1. 9. 사망하였고,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인 D가 망인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자녀 J, K는 상속을 포기하였다).

바. 피고 B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현재까지 채무초과 상태에 있고, 별도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송금액은 망인이 피고 B에게 대여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2,83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이 사건 송금액은 망인으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 B이 그 전에 망인의 배우자인 D에게 대여한 돈을 망인이 대신 갚은 것이거나 D가 도박에 사용할 돈을 피고 B의 계좌로 대신 수령해 준 것이다.

나. 판단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2020. 12. 24. 망인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L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 B이 2020. 12. 24. 망인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망인이 그다음 날인 2020. 12. 25. 피고 B에게 위 돈보다 많은 500만 원을 송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200만 원을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이라 보기 어렵고 오히려 위 500만 원이 대여금으로 교부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②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송금액과 관련하여 그 돈의 지급에 앞서 피고 B이 D에게 돈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③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2021. 1. 22.자 1,850만 원 중 600만 원은 같은 날 L에게 기존 대여금 변제를 위해 지급하였고(다만 M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나머지 1,250만 원도 같은 날 및 그다음 날에 모두 현금으로 출금하였던 점, ④ 피고 B은 위와 같이 출금한 현금 1,250만 원을 모두

D에게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⑤ 위 L은 당심에서 ‘2021. 1. 22. 피고 B와 식사를 하다가 “좀 있으면 형부(망인)가 돈을 부쳐줄 것이다 그러면 (돈을) 부쳐줄게”라고 말하였다. 실제로 1,850만 원이 입금되자 피고 B에게 빌린 돈인지 물었는데, 피고 B은 “아니야 내가 빌린 게 아니고 내 돈 준 것을 저거(D) 신랑(망인)보고 부치라고 해서 내가 그렇게 받은 거야. 항상 그렇게 해 와”라고 대답하였다’, ‘피고 B이 D로부터 받을 돈이 있으니 D가 망인에게 피고 B이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한 것처럼 이야기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피고 B에게 돈을 송금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피고 B에게 지급하였던 이 사건 송금액은 대여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대여금으로 이 사건 송금액 합계 2,83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인 2021. 6. 29.부터 피고 B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2. 7.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피고 B이 피고 C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피고 B에 대한 2,83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대여금 채권은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피고 C에게 증여하였는바, 이 사건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B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물반환의 방법

따라서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C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등기국 2021. 2. 25. 접수 제1109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윤성, 판사 김아름, 판사 이순혁

별지

(1동의 건물의 표시)

부산 동구 E, F에 있는 G아파트

[도로명주소] 부산 동구 H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8층 아파트, 업무시설(오피스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부산 동구 E 대 204㎡

2. 부산 동구 F 대 270㎡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2층 1호

철근콘크리트구조 77.63㎡

(대지권의 표시)

1, 2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474분의 20.2987

끝.

